

# 廢棄物管理法

##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清潔히 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環境保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正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正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재·污泥·糞尿·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 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사람의 日常生活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糞尿 등 産業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産業廢棄物”이라 함은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污泥·殘滓物·廢油·廢酸·廢알카리·廢 고무·廢合成樹脂 등 廢棄物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5. “糞尿淨化槽”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解 등의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6. “쓰레기 處理施設”이라 함은 埋立·燒却·再生分類·堆肥化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7. “汚水淨化施設”이라 함은 糞尿와 生活下水를 함께 처리하는 淨化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産業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埋立·燒

却·分解·中和·시멘트 固形化 등의 방법에 의하여 産業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9. “畜産廢水淨化施設”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이 법은 原子力法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2章 一般廢棄物

第9條(特別清掃地域) ① 서울特別市·直轄市·市 또는 邑의 地域을 特別清掃地域으로 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市長 郡守(이하 “市長·郡守”라 한다)가 지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

② 郡守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面의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特別清掃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特別清掃地域안의 土地·建物の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便所 및 쓰레기用器를 設置하여 이를 衛生的으로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2. 서울特別市·市·郡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쓰레기를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市長·郡守가 행하는 一般廢棄物의 처리에 적극 努力하여야 한다.

第15條(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등의 設置)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共同住宅團地 기타 이에 準하는 地域내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建物기타 施設物에는 單獨 또는 共

同으로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에는 糞尿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한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置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⑥ 環境保全法第15條의 3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로서 同法第15條의 4의 規定에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동일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糞尿·生活下水 또는 畜産廢水와 廢水を 併合處理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한 事業場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⑦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및 畜産糞尿淨化施設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 第16條(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등의 管理)

①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施設의 内部清掃를 하는 등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당해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는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및 畜産廢水淨化施設이 그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管理되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改修·사용제한·사용금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의 所有者·또는 管理者가 그 施設의 内部清掃를 하지 아니하여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고도 内部清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④ 市長·郡守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및 畜産廢水淨化施設이 設置된 建物 기타 施設物에 出入하여 그 管理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出入·檢査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7條(一般廢棄物施設 設計·施工業) ① 糞尿處理施設·쓰레기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者가 아니면 設計·施工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 設計·施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가 자기의 事業장에서 排出되는 糞尿 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의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3.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 第1項 但書의 경우 環境廳長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할 수 있다.

③ 糞尿處理施設·쓰레기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變更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영농지역을 管轄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第12條의 規定은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의 登錄에 이를 準用한다.

### 第5章 補則

第34條(産業廢棄物의 輸入制限要請) 環境廳長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産業廢棄物의 輸入을 제한하여 줄 것을 商工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35條(家畜飼育의 제한등) ① 市長·郡守는 生活環境의 보전 및 國民保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家畜의 飼育을 제한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는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生活環境의 보전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家畜의 飼育者에 대하여 畜舍의 移轉 기타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하고자 할 때에는 6月 이상의 移轉구상 期間을 주어야 하며, 移轉에 따른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6條(糞尿使用의 제한) ① 特別清掃地域안에서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糞尿를 肥料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市長·郡守는 特別清掃地域에서 營農者로

하여금 糞尿를 肥料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게 糞尿를 처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6章 副則

第43條(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業 또는 쓰레기處理業을 한 者

2. 第14條第2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할 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4. 第17條第3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施設·쓰레기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한 者

5. 第18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糞尿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한 者

6. 第18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産業廢棄物의 처리를 業으로 한 者

7. 第26條第2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産業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業 또는 쓰레기

기 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

3.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收集·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 淨化槽清掃業을 한 者
4. 第11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處理·쓰레기處理業의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5. 第14條第2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3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7. 第17條第3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8. 第17條第4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한 者
9.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 製造業의 登錄을 한 者
10. 第18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
12. 第24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産業廢棄物處理業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13. 第26條第2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1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처리한 者
2.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再生·이용을 目的으로 一般廢棄物을 처리한 者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糞尿收集 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 淨化槽清掃業 許可를 받은 者
5. 第11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收集·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 淨化槽清掃業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6.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料金を 받은 者
7. 第13條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8.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9.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說值할 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10. 汚水淨化施設에 관한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4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業登錄을 한 者
12. 第17條第4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13.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1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5.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1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再生·이용을 目的으로 産業廢棄物을 처리한 者
17.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

한 자

18.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자

19.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자

第45條 (過怠料) ①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버린 자

2. 第11條第4項 또는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에 위반한 자

3. 糞尿淨化槽 및 畜産廢水淨化施設에 관한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자

4. 第16條第4項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5.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자가 製造한 糞尿淨化槽를 판매한 자

7. 第21條第1項第3號, 第21條第3項, 第25條, 第29條 또는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자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1. 第9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자

2.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

3.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畜産廢水淨化施設을 사용한 자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容量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한 자

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糞尿를 肥料로 사용한 자

③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容

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한 자에 대하여는 2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87年4月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의 規定은 公布後 1年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 廢棄物管理法 制定理由

環境保全法과 汚物清掃法으로 二元化 되어 있는 廢棄物(糞尿, 쓰레기, 産業廢棄物)의 管理에 관한 사항을 單一法에 規定하여 廢棄物의 性狀 및 特性에 따른 管理를 強化하고, 環境廳長 및 市·道知事로 하여금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하여 廢棄物을 妥善하게 管理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主要骨子

가. 廢棄物을 一般廢棄物과 産業廢棄物로 구분하여 産業廢棄物외의 것은 一般廢棄物로 분류하여 그 管理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

나. 市長·郡守를 하여금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運營등 一般廢棄物處理事業을 수행하도록 하고 市·道知事로 하여금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廢棄物處理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國家는 廢棄物處理에 대한 技術의 研究·開發·지원을 하도록 함(法 第4條)

다. 環境廳長 및 市·道知事로 하여금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法 第8條)

- 라. 糞尿收集 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 糞尿處理業, 淨化槽清掃業 등 一般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도록 함 (法 第11條)
- 마.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도록 함 (法 第11條)
- 바. 일정規模 이상의 畜産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도록 함 (法 第15條)
- 사. 産業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도록 함 (法 第21條)

- 아. 國家 또는 市·道知事등은 産業廢棄物의 廣域處理를 위한 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도록 함 (法 第23條)
- 자. 産業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도록 함 (法 第43條)
- 차. 일정규모 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施設의 유지·管理에 關한 技術業務를 擔當시키기 위한 技術管理人을 두도록 함 (法 第27條)

### ◎ 환경청공고 제8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법령안입업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6년12월26일

환경청장

1. 법령명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안)

2. 주요내용

- 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수반한 “다량”의 쓰레기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나.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을 정함 (안 제4조).
- 다. 분뇨정화조 설치대상시설물을 정함 (안 제5조).
- 라.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정함 (안 제6조 및 별표 1).
- 마.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중 내부청소에 關한 大집행을 할 수 있는 對象을 正함 (안 제7조).
- 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 시

설을 정함 (안 제8조).

사. 敎育대상인 폐기물처리 擔當자를 正함 (안 제10조).

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長에게 위임할 업무를 正함 (안 제12조).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 管理법 시행령 (안) 分문 參조.

3. 이 敍령안에 對하여 의견이 있는 個人 또는 단체는 1987년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意見서를 環境청장 (參조 : 폐기물관리 國장 423-4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敍고사항에 對한 항목별 意見 (찬·반 여부 及 그 理由)

나. 姓名 (단체의 경우 단체명 及 그 代表자 名 及 주소)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